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11. 22. 이민석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9. 11. 25.
- 다. 상정일자 :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19.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채우진 의원

1)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식생활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마.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식생활교육지원법」
- 2)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19. 11. 21.~ 11. 25.(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신준호)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식생활 실천과 국민의 건강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제16조,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식생활 교육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11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09년 5월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가 2013년 8월 제정 공포된 사항을 봤을 때, 시의성은 다소 떨어짐.
- 그러나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과거 집에서 식사 예절을 배우던 식생활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먹거리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인식을 높여 식생활에 기본 방향과 실천적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는 사항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임.
생활 습관병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인에게 올바른 식생활 지침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건강뿐 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종래의 건강과 영양에 치중된 식생활 교육을 지양하고 사회적 모든 분야 즉 환경, 농업, 예절 등의 분야들과 융·복합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주도하고 환경보전, 농어업 활성화, 전통문화 식생활의 계승·발전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수립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